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헬기 운용에 필요한 인력 30명(소방위 2명, 소방장 2명, 소방교 4명, 소방사 4명, 전문경력관 18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없 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소방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. 21.~1.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501”을 “531”로 하고, 소방공무원 계 “438”을 “450”으로 하며, 소방준감 이하 “436”을 “44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3”을 “81”로 하며, 전문경력관 “56”을 “7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소방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501	531	+30
소방공무원 계	438	450	+12
소방준감 이하	436	448	+12
일반직 계	63	81	+18
전문경력관	56	74	+18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9